

<의안번호 제2008 - 4호>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2. 05.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2. 12.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2005. 12. 30)에 따라 기금 운용관을 변경하여 거창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함
 - (1) 규정에 의거(의한) ⇒ 에 따라(따른) (안 제1조, 제7조제1호)
 - (2) 각호 ⇒ 각 호,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제2조 본문, 제3조 본문, 제4조제3항, 제7조 본문, 제6조 본문)
 - (3) 때 ⇒ 경우(안 제6조제1호·제2호)
 - (4) 기타 ⇒ 그 밖에(안 제7조제3호)
 - (5) 매 회계연도마다 ⇒ 회계연도마다, 3월 ⇒ 3개월(안 제13조)

(6) 범위 내에서 ⇒ 범위에서(안 제14조)

나. 기금운용관을 변경 함(안 제12조)

○ 부군수 ⇒ 종합민원실장

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2조)

○ 「지방재정법」 제115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 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2005. 12. 3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운용관을 부군수에서 종합민원실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이 조례의 개정 시기를 살펴보면 2005. 12. 30일자로

발령된 행정자치부예규 제201호인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관은 기금별 담당 실과장으로 회계관직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15조는 2005. 8. 4일 법률 7663호로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재정법」 제94조로 조문이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비해 현행 조례 개정 시기가 상당히 늦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2005. 12. 30)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구 분	시도	시군구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국)장	기금별 담당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	기금별 담당실(과) 주무담당 및 업무담당